議案檢討報告書

1. 發議 또는 提出者: 大田直轄市 教育監

2. 件 名: 한밭 教育博物館 設置 運營 條例案

3. 案 件 要 旨: 別 添 參 照

4. 檢 討 意 見: 別 添 參 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2 年 4 月 日

文教・社會 委員會

專門委員 金 鎭



한 业 教育 博物館 設置 運營 條例案 檢 討 報 告 書

1992. 4.

文教・社會 委員會 専 門 委 員

目 次

1. 表	是久	₹ 理	由	•••••	2
Ι. ν	化 禾	÷ 144	: Ш		4

- 2. 主要骨子 ……………2
- 3. 檢 討 意 見 …………… 3

む と 教育 博物館 設置 運營 條例案検 討 報 告

이 條例案은 1992. 3. 27.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 되어 1992. 3. 31.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地方教育自治에관한 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거 한밭教育博物館을 設置하여 教育의 理念,目的,內容 方法 및 教育 與件 等의變遷過程을 理解하고 밝은 教育의 未來를 設計를 하는데 活用하고 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한밭敎育博物館의 位置를 정함. (案 第2條)
- 나. 한밭敎育博物館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3條)
- 다. 한밭敎育博物館의 組織 및 定員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 4條 - 案 第5條)
- 라. 한밭敎育博物館의 管理, 運營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 6條 - 案 第8條)
- 마. 한밭敎育博物館所屬鑑定委員會 設置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 9條)

3. 檢討意見

-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敎育博物館을 設置, 運營하여 敎育의 理念,目的,方法 및 變遷過程을 理解하고 未來를 設計하는데 活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第41條에 根據하고 있음.
-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으로는 博物館의 設置, 目的, 位置, 組織 및 定員에 關한 事項등 博物館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 한 事項을 規定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다고 할 것이나, 다만, 博物館의 位置를 豫算節減效果, 建物의 敎育遺物로써의 保存價值등을 사유로 大田三省國民學校 構內에 位置한바, 이는 市內中心街에 位置한곳으로써 交通混雜등 약간의 不作用이 憂慮 되므로 이에 대한 別途의 對策이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.
- 다음은 한밭 敎育博物館의 推進 經過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本 博物館 設立은 1990年부터 年次事業으로 推進되어 왔는 바,總事業費 376,398千원,敷地面積 4,200㎡(1,270坪)建物面積 2,060㎡(623坪)로써 展示室 3,休憩室 2,資料室 1室 등總 17室의 規模가 되겠으며
 - 1991. 12. 5일 本 博物館의 設置를 위하여 敎育部長官에게 承認 申請하여 1992. 1. 11 敎育部長官으로부터 그 承認 節次 를 得하였으나,

同事業 推進 當時에도 教育法 第26條의 規定에 의거 公共施設 의 設置등에 대하여는 教育委員會의 議決을 得하도록 規定하고

있었으나, 同 節次를 移行치 않고 추후에 敎育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事項은 行政 節次上의 問題點임으로 向後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

또한, 當議會가 '91年 7月 開院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모든 工程이 마무리 段階인 現 時點에서 本 條例案이 上程된것은 時期性과 節次上에 問題點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다만, 本 條例案은 本 博物館이 現在 設置 完了 段階에 있으며 大田 敎育 發展에 이바지하고저 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으로 本 條例案의 制定은 별다른 問題가 없을 것으로 思料됩니다.